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41128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4112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가소50566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 피항소인 사상신용협동조합

변론 종결 2015. 8. 28.

판결 선고 2015. 9. 11.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가소50566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938,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7.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6. A에게 대출기간 2009. 8. 26.부터 2010. 8. 26., 이자율 연 7.6%(단, 2011. 1. 26.부터 연 7.3%로 변경,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지급),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정하여 특례보증대출금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보증대출'이라고 한다)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증대출과 관련하여 2009. 8. 26. 원고에게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피보증인 A, 보증상대처 원고,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10. 8. 26.,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보통대출, 대출예정금액 2,000만 원, 부분보증비율 100%'를 그 내용으로 한다.

다. A은 2013. 4. 26. 납입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는데, 이에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위 A의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013. 7. 23.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자, 2013. 12. 13.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7,550만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청구채권으로 기재한 142,692,861원 및 이 사건 담보대출채무에 대한 2013. 8. 30.부터 2014. 3. 5.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906,849원 합계 156,599,710원을 공제한 금액인 18,900,290원에 대하여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고, 원고에게는 원금 1,099,710원 및 이자 18,255원 합계 1,117,965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보증채무이행 심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으로서 1,061,885원을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93호로

공탁하여 원고가 2014. 8. 8.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교부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피고의 신용보증약관 및 면책기준(이하 '이 사건 약관 및 면책기준'이라고 한다)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9.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되고 제5조의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대출로서 다음 각 목을 합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가. 보증비율에 의한 재단책임분담부분

나. 1-보증비율에 의한 채권자책임분담부분

(이하 생략)

12. '보증부대출직접담보'는 보증부대출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담보권 또는 보증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을 의미합니다.

13. '보증부대출관련담보'는 제12호의 담보를 제외한 담보 중에서 재단이 담보대위할 수 있는 인적담보를 포함한 일체의 담보권을 의미합니다.

제10조 신용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① 신용보증사고라 함은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채권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 내에 재단에게 도달되도록 반드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약정기일의 익일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
---	-----------------------------	----------	------------------

제12조 담보 및 권리 보전의무

① 채권자는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재단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직접담보(보증부대출관련담보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포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재단이 담보보존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도 담보를 해지하거나 포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채권자는 담보물의 경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보증부대출채권을 보전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④ 채권자는 재단으로부터 제3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보증채무이행 청구시기

① 채권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약정기일 내에 보증부대출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

제22조 면책

① 재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9. 제12조(담보 및 권리 보전의무)를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재단이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

<면책기준>

제12조(담보 및 권리보전의무)를 위반한 때다.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사고 사유 발생 후 다음 각 호를 위반한 때(1) 채권자가 보증부대출금을 제외하고 담보권을 행사한 때	보증부대출금을 제외하고 담보권을 행사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액에 보증비용을 곱한 금액	□ 담보해지 포기로 인한 회수불능 보증부대출금 계산방법2. 보증부대출에 관련이 있는 담보범위피보증인 또는 제3자가 피보증인의 채무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보증부대출 관련여부는 계약문언에 의하되 제3자가 제공한담보로서 채권자의 내부규정, 대출신청서, 대출품의서 등에 보증부대출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과 관련된 담보로 보지 아니함3. 회수불능 보증부대출 계산방법가.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권(1) 해지·포기물건 담보가액① 사고사유발생일을 전후하여 1년 이내의 아래 감정가격 또는 경매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적은 금액i) 한국 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격ii)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된 매각가격. 다만, 매각허가사실이 없으면 유찰된 최종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2) 회수불능 보증부대출금위 (1) '해지포기물건 담보가액'에서 사고사유발생일의 선순위채권액(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최고액)을 뺀 금액
--	--	--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과목을 '부동산담보대출'로 하여 2009. 8. 25. 1억 1,000만 원(이율

연 7.5%), 2009. 8. 28. 2,500만 원(이율 연 8.5%)을 각 대출(합계 1억 3,500만 원인 위 각 대출을 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고 한다)하면서 A과의 사이에 2009. 8. 28. 채권자 원고,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억 7,550만 원, 담보 종류 포괄근담보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 소유의 부산 금정구 B아파트 505호(이하 '이 사건 저당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3. 9. 5. '이 사건 담보대출금과 그에 대한 2013. 8. 29.까지의 미납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42,692,861원 및 이 사건 담보대출금에 대한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2013. 9.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저당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13. 9. 25. 기준으로 1억 8,200만 원이었는데,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한 최초 매각기일인 2014. 4. 25. 유찰되었고, 2차 매각기일인 2014. 5. 30. 최저매각가격이 1억 4,560만 원으로 낮아져 최종적으로 165,559,000원에 이 사건 저당부동산이 경락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보증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신용보증사고가 2013. 4. 26. 발생하였고, 원고가 신용사고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사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자 미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담보대출채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증대출채무 또한 피담보채무로서 담보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과 2009. 8. 28. A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담보임을 명시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증대출일이 2009. 8. 26., 이 사건 담보대출일이 각 2009. 8. 25., 2009. 8.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이 2009. 8.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보증대출채무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대출관련담보'에 해당한다.

2) 원고는 A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저당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보증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을 제7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상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담보채무와 같은 개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 포괄근담보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증대출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굳이 원고가 그와 같은 이익을 스스로 배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묵시적 약정의 존재는 인정되기 어렵다.

나. 원고의 담보 및 권리 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면책사유 발생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보증대출금 채권을 누락한 채 이 사건 담보대출금 채권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보증대출에 관하여도 담보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약관 제12조 제3, 4항, 제22조 제1항 제9호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12조(담보 및 권리보전의무)를 위반한 때 다. (1) 채권자가 보증부대출금을 제외하고 담보권을 행사한 때'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면책 범위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은 이 사건 보증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변제되지 아니한 약정기일의 다음 날인 2013. 4. 27.이고, 이 사건 약관 제22조 제2항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면책기준에 의하면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을 전후하여 1년 이내 감정가격 또는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된 매각가격(다만, 매각허가사실이 없으면 유찰된 최종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중 적은 금액이 '담보가액'이며, 위 담보가액에서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의 선순위채권액(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최고액)을 뺀 금액이 '회수불능 보증부대출금'으로 산정되고, 피고의 면책범위는 원고가 보증부대출금을 제외하고 담보권을 행사함에 따라 위 '회수불능 보증부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인 2013. 4. 27.로부터 1년 이내인 2014. 4. 25. 최저매각가격을 1억 8,200만 원으로 한 매각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유찰된 사실, 이 사건 보증서의 보증비율은 10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대출금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미납이자 발생하지 않았고,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4. 8.부터 2013. 8. 9.까지 연 7.5%의 이율에 따른 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 정한 담보물의 담보가액은 1억 8,200만 원이고,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선순위채권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담보대출채권(이 사건 담보대출채권이 선순위채권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은 135,452,054원[= 2,500만 원 + 1억 1,000만 원 + 452,054원(1억 1,000만 원에 대한 2013. 4. 8.부터 2013. 4. 27.까지 연 7.5%의 이율에 따른 이자)]이다.

다만, 이 사건 면책기준이 담보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금액을 면책범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행사할 수 있었던 담보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1억 7,550만 원으로 이 사건 저당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1억 8,200만 원보다 적으므로 피고의 면책범위는 채권최고액인 1억 7,550만 원에서 선순위채권액인 135,452,054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피고의 면책범위는 42,097,946원(= 177,550,000원 - 135,452,054원)이다(피고가 자신의 면책범위가 18,900,290원이라고 스스로 계산하고 잔여금을

원고 앞으로 공탁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면책기준에 따라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선순위 피담보채무를 산정하지 않고, 피고 내부 기준인 채권관리실무교본에 있는 담보여유액 산정방법에 따라 선순위채권액에 대하여 경매개시일로부터 6개월 뒤의 지연손해금까지 더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인데, 이는 피고 내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면책기준을 완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의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면책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면책범위를 산정하지는 않는다).

라. 소결론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인 2013. 4. 27. 기준으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보증대출채권 원리금은 원금 2,000만 원 및 이자 121,666원(= 2,000만 원 × 0.073 × 1/12, 원 미만 버림) 합계 20,121,666원이고, 앞서 본 피고의 면책범위가 위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차경환

판사곽태현

판사김진원